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한 유 화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재판에서 제시되는 유일한 증거, 특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심증을 가지도록 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피고인의 유죄를 나타내는 추가증거의 제시 여부에 따라 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한 추정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인 25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간단한 재판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각 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유죄확률에 대한 물음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증거는 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확률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 양상이 달랐다. 논의에서는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이 과대추정될 가능성과 제시되는 증거 종류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일한 증거, 평결, 증명력, 유죄확률, 법적 판단

[†]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 043-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재판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가설검증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며 동시에 논리법칙들을 이용한 논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가 누군가 기소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조사 결과로 수집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해당사건의 범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가설은 해당사건에 관련된 정보들로부터 유발되는 개연적 의심, 즉 가설유도적 추리(abductio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설이다. 법관 또는 배심원이 해야 하는 법적 판단은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에 기초한 검사측의 가설이 사실인지, 피고인측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즉, 귀납추론(induction)을 통한 검사측 가설의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이다.

어떤 재판에서 제시된 검사측의 증거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이유(이하 기소이유)와 같으며 그것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능력이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예를 들면, 검사의 기소이유가 범죄현장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때문이고, 이 증거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검사의 개연적 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판단자들(triers of fact)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한 증거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판단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판단자들이 이 유일한 증거가 검사의 가설을 증명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이다. 개연적 의심에 의해 만들어진 가설은 창의적(imaginative)이고 독창적(creative)인 사고의 결과물이고(Schum, 2002), 개

연적 의심을 유발한 사건과 논리적 또는 필연적인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존재하는 재판상황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위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매우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연적 의심에 의해서 유발된 가설은 그 의심을 유발한 사건과의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에,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가설을 생성하도록 한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판단은 설사 피고인이 진범일지라도 논리적인 오류를 포함하는 의사결정인 것이다.

법적 의사결정: 분석 vs. 직관

법관 또는 배심원의 법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두 가지 정보처리 체계 즉, 분석적 체계(analytic system)와 직관적 체계(heuristic system)가 개입한다. 분석적 체계는 느리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많은 노력을 들여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직관적 체계는 빠르고, 자동적이며, 적은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처리한다(Evan, 2009). 물론, 법적 의사결정에도 이 두 체계가 개입한다. Kadane과 Schum(1996)은 사법재판이 확률이론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확률이론에 기초한 베이저안 연결망(Bayesian network, Pearl 1988; 2000)을 이용한 설명들은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적 체계의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접근법이다. 다른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는 설명기반(explanatory-based)의 의사결정 과정을 가정하는 이야기 모형(story model, Pennington & Hastie, 1981; 1986; 1988)이다. 이야기 모형은 배심원

들이 재판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과적 또는 의도적 관계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 이야기가 증거의 해석을 도와 배심원들은 평결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모형의 핵심인 '이야기의 구성'에는 개인의 경험 및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각기 다른 인과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야기 모형의 근간은 직관적 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지안 접근법은 배심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와 잘 부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Ellsworth & Mauro, 1998; MacCoun, 1989; Pennington & Hastie, 1981), 따라서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증거를 조합하려고 시도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 모형(Hastie, 1993; Hastie & Penrod, & Pennington, 1983)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Devine, Clayton, Dunford, Seying, & Pryce, 2001). 이것은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관에 의존하는 방식의 정보처리 체계 즉, 직관적 체계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법적 의사결정 과정에 인지적 편견과 간편법(heuristics; e.g., 대표성 간편법)이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 전문가(법관, 검사, 변호인 등)와 일반인(배심원) 모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자세한 내용은 Rachlinski, 2000 참조). 직관적 체계의 개입이 쉽게 일어나는 상황은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인지적 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복잡한 계산과정이 포함된 경우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대부분의 법적 판단은 불확실성이 높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Saks & Kidd, 1980).

유죄인정을 위한 조건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라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러한 증명의 규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규칙이다.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재판상황은 이러한 규칙들에 근거하여 유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이 유일한 증거가 완벽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합리적 의심을 생성해 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검사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그 가설을 유발한 증거를 다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을 위해 최소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일부 의학적인 증거만 예외로 하고 있다(Carloway Report,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에만 유죄인정을 위해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를 요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310조). 그러나 개연적 의심에 의한 추론은 연역 추론과는 다르게 전체가 결론을 보증하지 못하며, '가장 좋은 설명의 추론'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Peirce, 1994), 자백에 의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는 검사의 가설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재판 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줄이려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 발현되기 쉽고,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상황이다. 더욱이, 배심원들은 법적 판단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 상황이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사실상의 지속력이 주어질 것이다. 앞으로 배심원 판단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바, 유죄인정을 위한 정보가 매우 불충분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재판상황에서 일반인의 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존재하는 재판 상황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즉, 피고인의 유죄증거가 부족하여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재판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유일한 증거와 함께 추가(보강)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제시된 유일한 증거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와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추가증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비교하였다.

일반인들이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하는 것의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1)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이하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사건 개요를 읽은 일반인들은 피고인의 무죄보다는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은 제시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들이 추정한 2)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이 실제 범인일 확률은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유일한 증거와 추가증거가 함께 제시된다면, 개연적 의심에 의해 유발된 가설의 증명을 위한 또 다른 독립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것이므로 3) 추가증거의 존재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일 확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4) 추가증거가 유일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는 사건 개요를 읽은 일반인들은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사건 개요를 읽은 일반인들보다 피고인의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연구 방법

독립변인 및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기소이유(자백 vs. DNA)와 추가증거의 유무(있음 vs. 없음)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은 두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따라서 총 네 개의 실험조건을 포함하는 2×2 교차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은 검사의 기소이유로 자백이 제시되었고, 법정에서도 자백만 증거로 제시된 조건(자백 조건), 검사의 기소이유로 자백이 제시되었고, 법정에서는 자백한 내용과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이 증거로 제시된 조건(자백/DNA 조건), 검사의 기소이유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이 제시되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과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이 증거로 제시된 조건(DNA/자백 조건)과 기소이유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이 제시되었고, 법정에서도 DNA가 발견된 사실만 증거로 제시된 조건(DNA 조건)이었다. 모든 사건개요에는 변호인 측에서 정당한 근거(허위자백 가능성 및 알리바이)를 들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피고인의 무죄 증거의 개수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개수와 일치하였다.

절차 및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간략한 사건 개요를 제시한 후,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유죄/무죄),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0%-100%), 유일한 증거(자백 vs. DNA)의 증명력(0%-100%) 및 추가증거(DNA vs. 자백)의 증명력(0%-100%)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단, 사건 개요를 제시하기 전에 누군가가 기소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일 확률(0%-100%)을 추정하도록 하여 기소된 사실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과 유죄 확률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

였다. 사건 개요를 읽고 유무죄 판단 및 각 확률 추정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15분을 넘지 않았다.

실험 참가자

본 연구에는 배심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 250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3.68세(sd: 8.09세)이었으며, 남자는 115(45.9%)명, 여자는 135(54.1%)명이었다.

결 과

실험조건에 따른 유무죄 판단

참가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실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교차분석 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실험조건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있었다. 자백, DNA와 DNA/자백 조건에서는 유죄판단 비율이 무죄판단 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고, 자백/DNA 조건에서는 무죄판단이 유죄판단 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1에

표 1. 실험조건에 따른 유무죄 판단

실험조건	판단		전체
	무죄	유죄	
자백	28(41.8)	39(58.2)	67(100.0)
자백/DNA	30(58.8)	21(41.2)	51(100.0)
DNA	32(38.1)	52(61.9)	84(100.0)
DNA/자백	16(34.8)	30(65.2)	46(100.0)
전체	106(42.7)	142(57.3)	248(100.0)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7.346, df=3, p=.062$). 또한 유일한 증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증거가 없는 경우(자백과 DNA 조건)에는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이 더 많았다. 그러나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 자백/DNA 조건은 무죄판단(58.8%)이 더 많았던 반면, DNA/자백 조건은 유죄판단(65.2%)이 더 많았다.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 확률

실험조건에 따른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 확률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은 자백과 자백/DNA 조건에서 각각 56.62%(sd=26.84%)와 57.22%(sd=25.91%)로 서로 유사하였고($p=.907$), 유일한 증거가 DNA인 경우에는 DNA와 DNA/자백 조건에서 각각 66.52%(sd=29.05%)와 70.30%(sd=26.16%)로 DNA/자백 조건에서 매우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p=.502$).

추가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자백과 DNA 조건)에,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은 유일한 증거가 DNA인 경우(66.52%)에 자백인 경우(56.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추가증거가 제시된 경우(자백/DNA와 DNA/자백 조건)에도 역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은 유일한 증거가 DNA인 경우(70.30%)에 자백인 경우(57.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피고인의 유죄 확률은 자백과 자백/DNA 조건에서 각각 56.75%(sd=18.77%)와 60.25%(sd=23.04%), DNA와 DNA/자백 조건에서 각각 66.36%(sd=24.24%)와 68.39%(sd=21.78%)로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각각 $p=.393$ 과 $p=.617$). 추가증거가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유일한 증거가 DNA인 경우(66.36%와 68.39%)에 자백인 경우(56.75%와 60.25%)보다 더 높게 추정하였다($p<.01$). 따라서 일반인들은 같은 증거일지라도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증명력을 더 높게,

표 2. 실험조건별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 확률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조건		N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 ¹⁾		피고인의 유죄 확률(%) ²⁾	
유일한 증거	추가증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백	무	69	56.62	26.84	56.75	18.77
	유	51	57.22	25.91	60.25	23.04
전체		120	56.88	26.34	58.24	20.67
DNA	무	84	66.52	29.05	66.36	24.24
	유	46	70.30	26.16	68.39	21.78
전체		130	67.59	28.21	67.08	23.33

- 1) 'A씨가 자백했다는 사실/피해자의 속옷에서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검출된 사실은 A씨의 유죄를 얼마나 입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확률 추정치
- 2) 'A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을 얼마입니까?'에 대한 확률 추정치

추가증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DNA의 증명력을 자백증거에 대한 증명력보다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유일한 증거 종류와 추가증거 유무의 효과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에 따라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추정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누군가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 확률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험 참가자들이 추정한 기소유죄 확률(누군가가 기소되었을 때, 그 사람이 유죄일 확률)을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소유죄 확률을 공변인으로 하고, 유일한 증거 종류와 추가증거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공변량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기소유죄 확률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유일한 증거 종류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1,211)=8.006, p < .01$), 추가증거 유무의 주효과($p = .400$) 및 유일한 증거 종류와 추가증거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p = .6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 자백의 증명력은 56.88%, DNA인 경우에는 67.59%로 일반인들은 DNA가 자백보다 피고인의 유죄를 더 증명한다고 판단하였다(표 2 참조). 따라서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재판에서 사실판단자들은 유일한 증거가 DNA인 경우, 자백인 경우보다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유죄 확률에 대한 유일한 증거 종류와 추가증거 유무의 효과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확률에 대한 추정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기소유죄 확률을 공변인으로 하고,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공변인의 효과($p < .01$)를 통제한 후, 유일한 증거 종류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1,224)=8.385, p < .01$), 추가증거 유무의 주효과($p = .337$) 및 유일한 증거 종류와 추가증거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p = .68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 피고인의 유죄 확률은 58.24%, DNA인 경우에는 67.08%로 일반인들은 피고인이 DNA에 기초하여 기소되었을 경우 그가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추정하였다(표 2 참조). 따라서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재판에서 사실판단자들은 유일한 증거가 DNA인 경우,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보다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추가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된 재판에서 추가증거의 존재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증거가 제시되었던 자백/DNA와 DNA/자백 조건의 자료를 선택하여 각 조건에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각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의 첫 번째 모형에는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기소유죄 확률과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모형에는 추가증거의 증명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고 추가증거의 종류가 DNA인 경우, 첫 번째 모형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249, p=.052$), 자백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380, t=2.286, p<.05$). 첫 번째 모형의 독립변인들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전체 변량의 1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NA의 증명력 즉, 추가증거의 증명력이 추가된 두

번째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705, p<.01$), DNA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554, t=3.739, p<.01$), 두 번째 모형의 독립변인들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전체 변량의 4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DNA의 증명력이 추가됨으로써 모형의 설명량은 25.8% 증가하였고($\Delta R^2=.258$), 이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유일한 증거가 DNA이고 추가증거의 종류가 자백인 경우, 첫 번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840, p<.001$), DNA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667, t=4.751, p<.001$). 첫 번째 모형의 독립변인들

표 3. 추가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추가증거	독립변인	β	t	F	R^2
DNA	(상수)		1.924		
	기소유죄 확률	.091	.547	3.249	.169
	자백 증명력	.380	2.286*		
	(상수)		1.162		
	기소유죄 확률	-.031	-.217	7.705**	.427
	DNA 증명력	.554	3.739**		
자백	(상수)		2.671*		
	기소유죄 확률	.086	.613	14.840***	.497
	DNA 증명력	.667	4.751***		
	(상수)		1.338		
	기소유죄 확률	.084	.668	15.091***	.610
	DNA 증명력	.553	4.193***		
	자백 증명력	.354	2.887**		

** $p<.01$, *** $p<.001$

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전체 변량의 4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증거인 자백의 증명력이 추가된 두 번째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5.091$, $p<.001$), 자백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354$, $t=2.887$, $p<.01$). 두 번째 모형의 독립 변인들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전체 변량의 6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백의 증명력이 추가됨으로써 모형의 설명량은 11.2% 증가하였고($\Delta R^2=.112$), 이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따라서 추가증거의 존재는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하여 사용한 증거와 법정에서 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가 동일한 경우, 일반인들이 피고인에게 어떤 평결을 내리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피고인에 대한 개연적 의심을 불러일으킨 증거로써 그의 유죄를 직접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유죄평결을 더 많이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된 경우와 추가증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 추가증거의 존재가 피고인의 유죄 확률을 판단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백, DNA/자백 및 DNA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은 피고인에게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하였고(58.2%~65.2%), 자백/DNA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은 무죄판단을 약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62$). 자백과 DNA 조건 즉,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조건에서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다면,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무죄평결보다는 유죄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된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 사람들의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 경향성이다. 사람들은 인과적 자료(causal data)와 진단적 자료(diagnostic data)를 종종 혼동하며, 인과적 추론을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Tversky와 Kahneman(1980)은 사람들이 인과적 추론을 할 때, 진단적 추론을 할 때보다 더 강한 확신감을 가지며, 인과적 추론이 향후 확률적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피고인의 유죄성과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의 존재를 인과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성 때문에 해당 증거를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증거에 압도되어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자백/DNA 조건과 DNA/자백 조건은 각 증거의 역할만 달랐을 뿐 제시된 증거는 모두 자백과 DNA 증거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무죄 판단의 패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죄성을 결정하는 데 각 증거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자백을 했던 피고인의 DNA 증거가 발견되는 것과 DNA 증거를 바

탕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 재구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증거들을 이해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이야기 모형(Hastie, 1993; Hastie, Penrod, & Pennington, 1983)을 적용하면 이 결과가 이해될 수 있다. 같은 정보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구성될 수 있고, 다른 이야기가 구성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조건에 따른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유죄 확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두 종속변인 모두에 대해서 유일한 증거 종류의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유일한 증거가 DNA일 때(DNA와 DNA/자백 조건), 자백일 때(자백과 자백/DNA 조건)보다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각각 67.59%와 56.88%)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각각 67.08%와 58.24%)을 더 높게 평정하였다. 이것은 아동성폭력 사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DNA 증거의 영향력을 검증한 Golding, Stewart, Yozwiak, Djadali, & Sanchez (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Golding 등(2000)은 아동성폭력 사건 시나리오에 DNA 증거만 제시된 조건, 아동의 증언만 제시된 조건, DNA 증거와 아동의 증언이 함께 제시된 조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평결과 피고인이 실제 범인일 확률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DNA 증거가 포함된 조건들에서 유죄평결이 더 많았으며, 피고인이 실제 범인일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이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보다 피고인의 유죄를 더 증명한다고 생각하며, Golding 등(2000)이 제안한 바와 같이, 배심원들은 DNA 증거가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재판에서 독립적인 또 다른 증거 즉, 추가증거가 제시되는 것이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증거가 제시되었던 조건(자백/DNA와 DNA/자백 조건) 각각에 대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증거는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 전체변량에 대해서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DNA-25.8%와 자백-11.2%)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추가증거가 제시됨으로써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을 더 높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가설 3을 지지), 추가증거가 재판에서 일반인들에게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추가증거가 DNA 증거인 경우, 추가증거의 증명력을 추가한 모형(표 3 참조)에서 기소유죄 확률과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이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는 점은 DNA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백증거가 추가증거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가증거의 유무보다는 어떤 종류의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었는지가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경우보다 유죄판단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자백/DNA 조

건의 실험 참가자들이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경우보다도 무죄판단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증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증거의 존재가 피고인의 추정된 유죄 확률 변량에 대한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를 가져오면서도 불구하고, 자백/DNA와 DNA/자백 조건의 유죄판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이야기 모형에 근거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자백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이며, DNA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상당히 증명하지만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는 정황(간접)증거이다. 이야기 모형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증거들을 조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며, 재구성된 사건이 피고인의 유죄를 나타내면 유죄평결, 무죄를 나타내면 무죄평결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그들이 처음에 접한 증거가 정황증거인 경우(e.g., DNA), 이 정황증거의 주관적 증명력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를 나타내는 사건을 구성할 것이다. 이후에 제시되는 추가적인 증거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라면, 이 증거는 배심원이 구성한 이야기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증명 또는 기각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심원이 구성한 이야기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처음에 접한 증거가 직접증거인 경우(e.g., 자백), 이 증거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증명하므로 배심원들이 구성하는 이야기는 증거 자체에 포함된 내용 이상으로 풍부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배심원들이 직접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에 하나의 정보로 추가될 뿐, 그 이야기의 타당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결정적인 역

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백/DNA 조건에서의 유죄평결은 DNA/자백 조건에서의 유죄평결보다 낮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에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이유와 동일 하면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무죄평결할 가능성 보다 유죄평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추가증거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증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배심원들의 유죄평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 배심원들은 자백증거보다 DNA증거의 증명력을 더 높게 평정하며, DNA증거는 자백증거보다 피고인의 유죄 확률 판단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배심원들이 직접증거인 자백증거보다 간접증거인 DNA증거를 더 신뢰하며 따라서 DNA증거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건 개요는 매우 간단하였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극단적으로 부족하였고, 배심원들이 평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제 재판상황에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유일하면서, 그 증거가 검사의 기소이유와 같은 재판 상황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판단 양상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로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의 양보다는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추후에는 직접증거의 다른 종류(예를 들면, 목격자

증언)와 간접증거의 다른 종류(예를 들면, 혈흔)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확실성이 높은 재판상황에서 일반인의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법적 의사결정의 오류 비율을 낮추고, 배심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절차적·정책적 방안 마련의 기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Devine, D. J., Clayton, L. D., Dunford, B. B., Seying, R., & Pryce, J. (2001). Jury decision making 45 years of empirical research on deliberating group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7(3), 622-727.
- Ellsworth, P. C., & Mauro, R. (1998). Psychology and law. In Gilbert, D. T., Fiske, S. T., & Lindzey, G.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684-731. Boston: McGrae-Hill.
- Evans, J. S. B. (2009). How many dual-process theories do we need? One, two, or many?. In Evans, J. S. B., & Frankish, K. E. (Eds.). *In two minds: Dual processes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ing, J. M., Stewart, T. L., Yozwiak, J. A., Djadali, Y., & Sanchez, R. P. (2000). The impact of DNA evidence in a child sexual assault trial. *Child maltreatment*, 5(4), 373-383.
- Hastie, R. (1993).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tie, R., Penrod, S., & Pennington, N. (1983). *Inside the jury*. The Lawbook Exchange, Ltd.
- Kadane, J. B. & Schum, D. A. (1996). *A Probabilistic Analysis of the Sacco and Vanzetti Evide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ord Carloway (2011). *The Carloway Review: Report and Recommendations*, ch 7.1.
- MacCoun, R. J. (1989). Experimental research on jury decision-making. *Science*, 244(4908), 1046-1050.
- Pearl, J. (1988). *Probabilistic Reasoning in Intelligent Systems*. San Mateo: Morgan Kaufman.
- Pearl, J. (2000). *Causality: Models, Reasoning, and Infe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irce, C. S. (1994). Application to the Carnegie Institution, July 15, 1902. Manuscript L75, *Analytical reconstruction and editorial work by Joseph Ransdell*, Indiana University.
- Pennington, N., & Hastie, R. (1981). Juror decision-making models: The generalization gap. *Psychological Bulletin*, 89(2), 246-287.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242-258.
- Pennington, N., & Hastie, R. (1988).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Effects of memory structure on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4(3), 521-533.
- Rachlinski, J. J. (2000). Heuristics and biases in the courts: ignorance or adaptation. *Oregon Law Review*, 79(1), 61-102.

- Saks, M. J., & Kidd, R. F. (1980).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and adjudication: Trial by heuristics. *Law and Society Review*, 15(1), 123-160.
- Schum, D. A. (2002). Species of abductive reasoning in fact investigation in law. In MacCrimmon, M & Tillers, P. (Eds). *The Dynamics of Judicial Proof*. Physica-Verlag HD.
- Tversky, A., & Kahneman, D. (1980). Causal schemas in judgments under uncertainty. In Fishbein, M. (Ed.). *Progres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NY.
- 1 차원고접수 : 2016. 01. 22.
심사통과접수 : 2016. 03. 07.
최종원고접수 : 2016. 03. 12.

Sole Evidence and Legal Judgement of Lay People

Yuhwa Han

Kwangba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test the impact of unique evidence, on which the prosecution was solely based, upon the lay people's verdict for the defendant. We also examined if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 and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ould vary by the type of the sole evidence and the existence of additional evidence. In the study, 250 lay people participated and were asked to read one of the four simple trial scenarios, to render a verdict for the defendant, and to estimate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and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 The results showed that lay people tended to return a guilty verdict. The additional evidence was foun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 and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additional evidence. In discussion, it was suggested that lay people would overestimate the probative value of the unique evidence that was the sole basis of the prosecution. Finally, w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he evidence type on legal judgement in trials.

Key words : sole evidence, verdict, probative value, probability of guilt, legal judgement